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2. 12. 06)

2013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광용]

<의안번호 제2012 - 90호>

〔 2013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 〔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11.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11. 19.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2012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자금 운용체계의 이원화(총괄, 운영부서)로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운영부서 : 각 기금관리운영 실·과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년말 현 재 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조 성 액 ④=①+ 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합계 (4개)	4,326	197	294	4,229	△97
사회복지기금	3,744	169	273	3,640	△104
식품진흥기금	26	8	3	31	5
아름 예술제 진 흥 기 금	502	18	18	502	0
체육진흥기금	54	2	0	56	2

5. 검토의견

■ 주민생활지원실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년말 현 재 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 재 액 ④=①+ 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사회복지기금	3,744	169	273	3,640	△104

◆ 사회복지기금(p11)

- 사회복지기금은 종전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2012년 조례 제2093호)에 의거 관리운용 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 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여성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매년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며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기준액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며
 -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하며
 -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을 지원 하며
 -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수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며
 - 여성발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3,744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9백만원, 지출 273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640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봉사과**(p19)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년말 현 재 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 재 액 ④=①+ 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식품진흥기금	26	8	3	31	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26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백만원, 지출 3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1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관광과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2년말 현재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02	18	18	502	0

◆ 아림예술제진흥기금(p24)

-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림예술제 행사잉여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백만원, 지출 18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관리사업소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2년말 현재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체육진흥기금	54	2	0	56	2

◆ 체육진흥기금(p28)

-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 지원기준은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영역으로 하며
- 지원대상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54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6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36호, 2011. 5.30, 일부개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12.08.06 조례 제20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5.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용도별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장 노인복지사업

제8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1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여성복지사업

제9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2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내 단체로 한다.

1. 여성관련 비영리단체 및 공익단체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
 3.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② 제3조제2호의 여성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 단체의 국제교류
 4.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여성관련 주요 사항

제4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3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특별장학생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에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장학생 중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 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지출계획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③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장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제11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5.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③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융자한도액은 자활공동체는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

제6장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제3조제5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의 학자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 ④ 제3조제5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용자한도액은 1천만원
 2.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제7장 보칙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용도별 담당주사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 및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8.06 조례 제2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3.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림예술제(이하 "아림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림제 행사 잉여금
3. 기타 수입금

② 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거창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림제 진흥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제 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아림제 행사추진
2.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제 6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제 9조 (기금지급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아림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림제위원회에 지급한다.

② 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폐쇄기간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전문개정) 2012.08.06 조례 제20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5 조례 제 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06.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